

2020년도 1/4분기

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20. 4.

감사위원회

1. 개요

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
“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

보고대상

- 기 간 : 2020. 1. 1. ~ 3. 31.(2020년 1분기)
- 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(원순씨 핫라인) 및 오프라인(우편, 방문 등)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

접수결과

- 2020년 1분기 총 134건 접수

[표 1] 2020년 1분기 창구별 접수현황 (단위 : 건)

접 수 창 구	합 계	1월	2월	3월
공직자비리신고	79	34	22	23
공 익 신 고	50	16	19	15
부 정 청 탁	2	-	1	1
퇴직공무원특혜	3	2	1	-
합 계	134	52	43	39

2.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

□ 제보 경로 분석

[표 2]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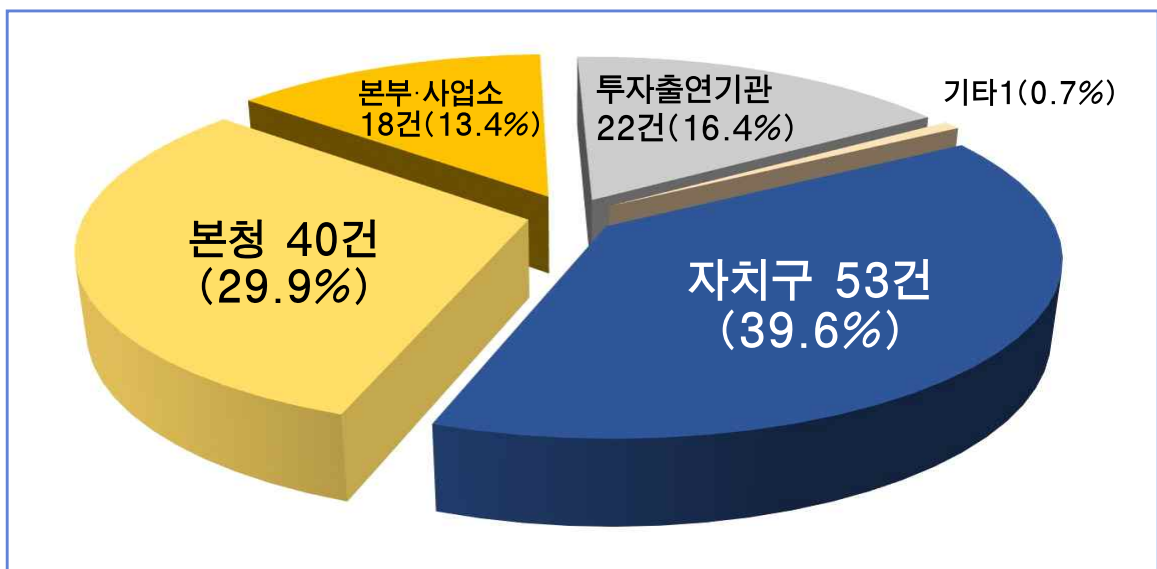
(단위 : 건)

경로	합 계	온 라 인 홈페이지/모바일	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	기 타 응답소/우편/방문/팩스
접수건수	134 (100%)	127 (94.8%)	5 (3.7%)	2 (1.5%)

*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

□ 접수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

-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53건(39.6%)으로 가장 많았음
 - 공동주택관리법/식품위생법 위반 등 시민 생활상의 공익신고 27건
 - 자치구 직원 복무 및 불친절 등의 공직자비리 등 26건
- 본청 소관 사무 제보 40건(29.9%), 본부/사업소 소관 18건(13.4%)
 - 본청의 경우 공익신고 12건, 공직자비리신고 등 28건 등 접수
 - 본부/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 5건, 공직자비리신고 등 13건
- 그 외에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가 22건(16.4%), 기타 1건(0.7%)
 -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공익신고 5건, 공직자비리신고 17건
 - 기타 1건은 시 소관사무가 아니거나 불명확한 건



3. 공익제보 분류

□ 제보내용의 분류

○ 접수된 134건 재분류 결과,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101건

[표 3]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

(단위 : 건)

총계	공익제보 해당 101건		일반민원/기타
	부패신고	공익신고	
134 (100%)	84 (62.7%)	17 (12.7%)	33 (24.6%)

* 청원/제안/건의/항의 등 일반민원 성격 제보는 공익제보로 보기는 어려우나, 공익제보 처리에 준하여 접수 답변하고 있음

※ 조례상 '공익제보' 해당 신고 범위

구 분	개 요	신고 대상 행위
부패 신고	부패방지법 제2조(정의) “부패행위”신고	1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공익 신고	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“공익침해행위”신고	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284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	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	공정한 업무수행, 부당이익의 수수금지, 업무숙지의 의무,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,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 위반 등

4. 공익제보 내용 분석

□ 공익제보 해당 101건 세부내역

○ 부패신고 해당 84건 세부 내용

[표 4]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구분	소관기관	건수	내 용
부 정 청 탁	본 청	2	업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의심
	소 계	2	
업 무 부 적 정	본 청	1	업무 추진 과정 중 고의 또는 미숙/부주의 행위 관련 (업무 부당행위 혹은 업무소홀)
	본부·사업소	1	
	자 치 구	8	
	투자출연기관	1	
	소 계	11	
불 공 정 행 위	본 청	8	입찰이나 채용, 인사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의심
	본부·사업소	4	
	자 치 구	2	
	투자출연기관	10	
	소 계	24	
복 무	본 청	3	초과근무/출장 부정행위, 직무 대만, 불친절, 품위유지 위반 등 행동강령 관련
	본부·사업소	9	
	투자출연기관	3	
	자 치 구	5	
	기 타	1	
	소 계	21	
위 탁 및 보조금 단 체 관 련	본 청	12	시·구의 위탁시설이나 보조금시설의 부당행위 의혹 관련
	본부·사업소	1	
	투자출연기관	1	
	자 치 구	12	
	소 계	26	
총	계	84	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○ 공익신고 해당 17건 세부 내용

[표 5]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구 분	건수	소관기관	조치 상황	내 용
공동주택관리법	3	투자출연	개선1, 해당없음1	관리업체 업무소홀 등
		자 치 구	조치1	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정신고
개인정보보호법	1	자 치 구	진행중1	민원 개인정보 노출
건 축 법	2	자 치 구	개선1, 조치1	불법 건축물 신고 등
교 통 약 자 법	1	자 치 구	해당없음1	장애인주차구역 주차 확인요청
도 로 법	1	자 치 구	개선1	노점행위 신고
도시가스사업법	1	자 치 구	진행중1	가스관리업체 부적정 신고
사회복지사업법	1	자 치 구	진행중1	복지법인 부적정 행위
석 면 관 리 법	1	자 치 구	해당없음1	재건축현장 석면수거 의혹제기
소 방 시 설 법	1	본부사업소	개선1	주차장 대피로 미확보
식 품 위 생 법	2	자 치 구	조치1, 개선1	유통기한 지난 식품판매 등
전 기 사 업 법	2	자 치 구	취하2	배전설비 무단공사 등
전 자 상 거 래 법	1	본 청	진행중1	온라인상품 불공정 할인
총 계	17			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5. 처리 및 조치 결과 (2020.4.5. 현재)

□ 처리 내역

[표 6] 접수제보 처리 현황

(단위 : 건)

총계	처분 및 개선 35		종결 37					조사중	취하
	처분(조치)	개선 등	해당 없음	증거 불충분	중복 종결	권한 없음	기타		
134	9	26	26	1	6	3	1	48	14

※ 개선 등 내역 :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개선약속,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

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5항

□ 처분(조치) 내역

[표 7] 공익제보 조치 결과(요구 포함)

(단위 : 건)

번호	신고구분	신고 내용	처분기관	조치 내역
1	부패	공무직 관리부실 직원 신고	자치구	주의1, 개선2
2	부패	구 위탁시설의 회계관리 부실 등 신고	자치구	징계(요구)2, 기관경고1, 통보2
3	부패	공무직의 고철 무단 판매	본부·사업소	징계(정직)1
4	부패	공인중개사법 위반 민원 부당처리	자치구	신분상 조치(훈계)1
5	부패	시립시설 예산 등 사업관리 부적정	본청	환수 2,300천원
6	부패	시설교육생의 병가관련 허위자료 제출	본청	해당 교육생 훈계1
7	공익	유통기한 지난 식품판매	자치구	과태료 부과(300천원)
8	공익	공금에서 아파트관리소장 합의금 등 지출	자치구	시정명령
9	공익	공원 내 미신고 건축물 신고	자치구	철거조치